

『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1996년 UN 세계 식품정상회담에서 식품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

또한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은 식품보장의 영역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먹거리 보장(food security)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.

-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서울특별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서울시의 영양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